

의안 번호	2482	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0. 2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0. 2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0. 16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국장 노선숙)

가. 제안이유

- 생활민원처리 시 무상제공 대상 범위에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, 65세이상 1인가구를 추가하고,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무상제공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문 제목 변경(안 제4조)
- 생활용품 수리 순회서비스 신설(안 제5조제3항)
-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및 내용 명시, 자원봉사자 모집(안 제5조의2)
- 무상제공 대상 확대(안 제6조)
- 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, 무상제공 명시(안 제7조제2항 ~ 제4항)

다. 근거법규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
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주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민원처리 시 무상제공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무상제공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 처리반의 칼같이 등 생활용품 수리 순회서비스를 신설하고, 안 제5조의2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및 서비스 내용 명시,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 규정, 안 제6조 민원처리시 무상제공 대상 확대, 안 제7조의제2항에서 제4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및 무상제공 명시 등임.
- 현재 집행부에서는 '23. 11. 7일 첫 시행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현장서비스의 날을 시행하고 있음. 조례안 제7조제3항 중‘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서비스 및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’라고 되어 있는데, 첫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체험결과물에 대한 조치내용과 관련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을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노인복지법

제26조(경로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5. "다자녀 가정"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